



주요 법령해석

[전자금융거래법] 모바일 쿠폰 재판매업자 및 종이상품권 또는 대형유통사 통합 포인트로 교환이 가능한 E 쿠폰을 단순 유통하는 사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법¹⁾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이하 “선불업”)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230407)

□ 요청대상 행위

- 모바일 쿠폰을 매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위탁을 받아 수수료를 수취하는 E쿠폰 재판매업자(E쿠폰을 발행하지 않는 사업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종이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한 E쿠폰 또는 대형유통사 통합포인트로 교환이 가능한 E쿠폰을 단순 유통하는 사업자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 등록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 관련 법령의 요지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의미함(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의 대가로 선불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의 100분의 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여야 함(전자금융거래법 제25조의2 제1항).

1) 2024. 9. 15. 시행 전자금융거래법을 의미함. 이하 동일함.

□ 법령해석 회신의 요지

- 외연상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선불충전금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게 선불업 등록 의무가 발생함.
- 다수의 사업자가 하나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와 관련해 매입, 제휴, 계약 등의 외연상 관계로 얹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해서는 한 사업자에만 선불업자로 등록할 의무가 발생함.
-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선불충전금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선불충전금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에게 선불업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음.